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 명시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58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 명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수행사업을 규정한 제6조(사업)에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의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 (생략)	제6조(사업) ①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u>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학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사학재단법”이라 함)」 제6조(사업)에 호를 신설하여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사립대학교 학생 대상 기숙사 설치 자금 융자 사업은 「사학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에 근거하고 있으나, ② 국·공·사립대

1) 「사학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학교 학생 대상 기숙사 설치 자금 융자 사업은 「사학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와 제19조의2(기금의 예탁)로 이원화되어 있고, ③ 사립대학교 학생 대상 기숙사 운영 사업은 「사학재단법」 제6조(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기타 사업에 포함됨. 또한 ④ 기숙사 시설 현황 집계·분석·공시, 대학생 주거종합플랫폼 개발·운영 사업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음.

[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 및 근거 규정]

사업	근거 규정
① 사립대학교 학생 대상 기숙사 설치 자금 융자	「사학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제1항 제1호 사학기관의 재산 등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제4호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국·공·사립대학교 학생 대상 기숙사 설치 자금 융자	「사학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제1항 제4호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학기관 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 「사학재단법」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예탁 가능
③ 사립대학교 학생 대상 기숙사 운영	「사학재단법」 제6조(사업)제1항 제6호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기숙사 시설 현황 집계·분석·공시, 대학생 주거종합플랫폼 개발·운영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제1항 제13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7조(공시의 권고 등)제2항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 수집·관리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 가능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5조(교육부 소관)제8항 재단 위탁 사무 제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자료: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및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재단이 수행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은 「사학재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고, 기숙사 이외에 재산, 교지 등으로 표현되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제6조(사업)에 규정될 경우, 재단이 수행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이 「사학재단법」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재단에서 대학생의 주거 편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생의 주거복지 증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학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는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학생 주거복지 증진 지원 사업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제6조(사업)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6조(사업)와 제19조(기금의 사용) 비교]

구분	제6조(사업)	제19조(기금의 사용)
법적 성격	• 조직법적 근거(직무 범위) :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정의	• 재정법적 근거(지출 제한) :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한정
규정 범위	• 기금 사업 + 비기금 사업(일반회계, 위탁사업 등)	• 사학진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한함
규정 대상	• 재단의 행정력, 인력, 조직의 활동	• 사학진흥기금의 실제 투입 및 운용

자료: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및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사학재단법」 제1조 목적 등에서 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의2 정의 규정에 따르면 사학기관에는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학력 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포함되나,²⁾ 국·공립학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사학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국·공립학교까지 확대하는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사학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27호)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사학재단법」 제6조 사업의 내용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우리 부의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사학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문 의 처
02)6788-5189